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386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386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8가단520348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문대근

변론 종결 2022. 8. 11.

판결 선고 2022. 9.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8가단52034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5. 1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선택적으로,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C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C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철한

판사이정형

판사구광현

별지

1) 제1심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제1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